

손로몬×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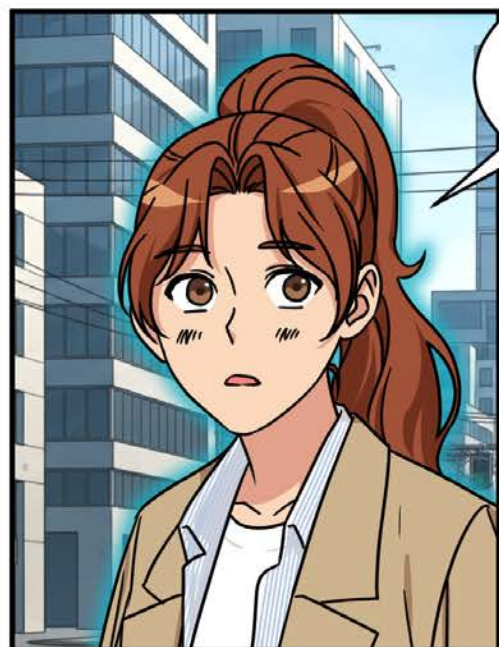
3일의 생환기

03. 로몬,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다!



손로몬. 넌 왜 그리
법리와 판례 연구에
집착하느냐?

그게,
그러니까….



어!
저 사람들?!!

혹시
김진우 씨?

아, 네.



송침반도 아무
반응이 없고,

소송의 오로라도
보이지 않는데?

저 안경 쓴 남자.
마음에 걸려요.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한 것
뿐이라고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액의 수당을 받고자 이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저 남자를 설원재로
데려가야 해요!



글쎄,
저 자는 소송과
아무 상관이....





제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률 상담받을
일도 없고, 그럴
돈도 없어요.



무료 상담이에요!
특히, 지금 하시는
업무와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알바행' 앱을 통해
정식으로 채권추심
알바를 하고 있어요.

공짜라고...?

8사 8팀 송OO 사원

인사팀 실장
이름: 안OO
생년월일: 7*****
주소: 경기도 OO시 ***로 170번지 000호
인상착의: 검은 양복에 갈색 안경, 짧은 머리
금액: 685만원
인사말: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 최민재 과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인사팀 실장
출발 해주시고 서두르시다

네 //

외근직이라 이렇게 업무
지시를 받아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는
것뿐이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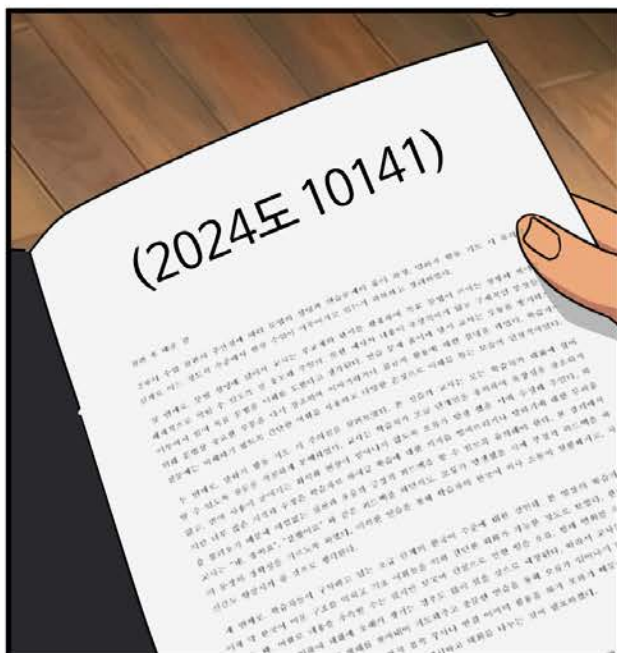
굉장히 의심스러운
업무방식인데요.
불법적인 일에 가담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펼쳐보시겠어요?
그 안에 당신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적혀있을 거예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
나한테
필요하단 거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아니, 저는 그냥
알바생이에요.

보이스피싱
공동정범
이라니요!



* 공동정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해당 판례의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메시지로 지시를 받으며,



해당 회사와 무관한 금감원 등 **기관 문서를**
메신저로 받아 출력해서 준비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부탁으로 왔다면,
그 자리에서 **현금을 수령**했으며,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거나
ATM기에서 **쪼개기로 입금**하고,



받은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등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9건 현금 전달하고
280만 원이라는 고액의 수당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어요.
결국 이 판례에서는
2년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시키는 대로 했을
텐데 2년형이라니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



관리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



모집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



유인책 (콜센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



현금수거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

보이스피싱은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내 상황과
딱 들어맞아!



그렇네요.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사실
범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말하면 될 줄 알았어요.

다행히,
당신에겐 아직 수습할
기회가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아요.
더 피해자가 없도록
신고합니다.



송침반도, 잿빛 오로라도
없었다. 그런데 저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건 어찌
알았느냐?

비슷한 사건을
판결한 적이
있거든요.

큰 돈 번다는 유혹에,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안타까웠어요.



진우 씨도, 잘못된
선택에 대한 처벌은
받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시작했으니, 이번 일,
잘 끝난 거 맞죠?

글쎄. 인간이 쉽게
바뀔진 모르겠지만.

그냥 좀 그렇다고
말해주면 안 되나?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 건 했군...

스



- to be continued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요약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합하여 '처벌특례'라 한다)이 적용된다.

-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이다.
-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은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후 해당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이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단서 제1호가 규율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시부터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 제정 당시 진로변경제한선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입법자가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시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더라도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전용차로 표시에 관한 청색실선으로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백색실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로 볼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